(별지 제1호 서식)

**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신청서**

|  |
| --- |
| 사 진 |
|  |

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
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을 신청합니다.

1. 성 명 : (한자 : )

2. 생 년 월 일 :

3. 주 소 :

4. 근 무 처 :

5. 핸 드 폰 :

가.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 요건 해당 유형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3년 이상 업무  종사경력자 | 부동산자산  운용전문인력 | 건설 직무분야  산업기사 이상 | 변호사 | 회계사 |
|  |  |  |  |  |

나. 관계기관 종사경력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기 관 명 | 근무부서 | 근무기간 | 담당업무 | 비 고 |
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

다.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 관련 자격증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자격명 | 발급기관 | 발급년월일 | 발급번호 | 비 고 |
|  |  |  |  |  |

상기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본인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 
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.

첨부: 증빙서류 각 1부

201 . . .

신 청 인 (인)

(재)건설산업교육원 귀중

(건설사,엔지니어링사 3년이상 업무종사경력자용)

**당해업무종사 경력증명서**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주 소 :

위 사람은 당사에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  
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함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재직기간 | . . . ~ . . . | ( 년 월) |
| 당해업무  종사기간 | . . . ~ . . . | ( 년 월) |
| 근무부서 |  | |
| 관련업무 |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업무 | |

년 월 일

회 사 명 :

대 표 명 : (직인)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발 급 처 |  | 담당자명 |  |
| 전화번호 |  | 팩스번호 |  |

재단법인 건설산업교육원 귀중

(금융기관용)

**당해업무종사 경력증명서**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주 소 :

위 사람은 당사에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  
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함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재직기간 | . . . ~ . . . | ( 년 월) |
| 당해업무  종사기간 | . . . ~ . . . | ( 년 월) |
| 근무부서 |  | |
| 관련업무 |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투자운용 업무 | |

년 월 일

회 사 명 :

대 표 명 : (직인)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발 급 처 |  | 담당자명 |  |
| 전화번호 |  | 팩스번호 |  |

재단법인 건설산업교육원 귀중

[별표 제3호]

**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요건 증빙서류(제7조 관련)**

**□ 3년 이상 업무 종사경력자**(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다목)

|  |  |
| --- | --- |
|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 요건 | 적용 예 / 해석 / 확인서류 등 |
| ㅇ 해외건설 등 관계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경력 | ㅇ 관계기관 경력증명서 및 당해업무  종사경력증명서  \* 관계기관  - 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,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별첨 1의 자료 첨부(이하 동일함) |

**□ 1년 이상 투자운용 업무 종사경력자**(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다목)

|  |  |
| --- | --- |
|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 요건 | 적용 예 / 해석 / 확인서류 등 |
| ㅇ 해외건설 등 관계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 업무에 1년 이상 종사경력 | ㅇ 관계기관 경력증명서 및 당해업무  종사경력증명서  \* 관계기관  - 금융기관,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 |

**□ 건설 직무분야 산업기사**(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다목)

|  |  |
| --- | --- |
|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 요건 | 적용 예/해석/확인서류 등 |
|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| ㅇ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|

**□ 부동산투자운용전문인력**(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다목)

|  |  |
| --- | --- |
|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 요건 | 적용 예/해석/확인서류 등 |
|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| ㅇ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 수료증 사본 |

**□ 변호사**(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다목)

|  |  |
| --- | --- |
|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 요건 | 적용 예/해석/확인서류 등 |
| ㅇ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| ㅇ변호사 자격증 사본 |

**□ 회계사**(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다목)

|  |  |
| --- | --- |
|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 요건 | 적용 예/해석/확인서류 등 |
| ㅇ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| ㅇ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|

**□ 관계기관 증빙서류(별첨1)**

|  |  |
| --- | --- |
| 관계기관 | 증빙자료 |
|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 | ㅇ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사본 |
| 건설업 등록을 한 자 | ㅇ 건설업 등록증 사본 |